

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 기간 (하단참조)
신청인	업체명		
	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운항증명번호			
변경사유	선택	변경사항	변경예정일 (해당되는 난에만 기재)
	<input type="checkbox"/>	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	
	<input type="checkbox"/>	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	
	<input type="checkbox"/>	노선 추가 개설	
	<input type="checkbox"/>	항공운송사업 양도·양수	
<input type="checkbox"/>	사업 합병		
운항관련	투입기준		
	개시에정일		

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2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 2.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(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
처리기간	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: 15일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, 사업의 양도·양수, 합병: 45일 노선 추가 개설: 5일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